

일본연구센터 동정(2009.2.28~8.31)

I. 학술행사

1. 국제 학술 심포지움

◆ “글로벌시대의 자국연구, 타국연구”

3월 9일 고려대학교 일어일본학과와 본 일본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데즈카야마가쿠인대학교 무사시대학이 후원한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각기 다른 학문분야에서 활약하는 연구자들이 상호소통하기 위해 열렸으며, 일본연구의 방법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발표자		발표내용
안제로 이시 (アンジェロ・イシ)	무사시대학 교수	글로벌시대의 이민연구- 일본계 브라질인, 재의 브라질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야우치 준코 (宮内淳子)	데즈카야마가쿠인 대학 교수	일본의 무용계로 본 문화교류와 그 영향- 1920년대를 중심으로
전성곤 (全成坤)	고려대 HK연구교수	만주 <건국대학>과 조선인-동화와 차이화의 교차-
후루타 신이치 (古田真一)	데즈카야마가쿠인 대학 교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중국 현대 아티스트의 전략- 개혁개방30년을 맞이한 중국미술의 궤적을 찾아
가가와 마유미 (香川檀)	무사시대학 교수	전쟁의 기억과 젠더- 일본과 독일의 현대예술을 중심으로
김청균 (金青均)	고려대 HK연구교수	시가 문학과 장소(志賀文学と場所)
이타가키 히로시(板垣博)	무사시대학 교수	일본의 기업: 강한 제품과 약한 제품- 경영조직과 물품 만들기의 관계
니즈마 요시스케(新妻義輔)	데즈카야마가쿠인 대학 교수	벌레의 눈, 새의 눈, 잠자리의 눈-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상호이해를 위해서
박선영 (朴宣映)	고려대 HK연구교수	국제저널리즘과 지역연구-주한일본특파원 리포트읽기-

2. 콜로키움과 특별강연회

일시	2009년 3월 27일 (특별강연회)	
발표자	쫏키 히데타로 (一寸木英多郎)	일본국제교류기금 (日本国際交流基金)
제목	한일 국민교류의 현상과 금후의 과제-계량적 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본 몇가지 측면- 日韓国民交流の現状と今後の課題-計量的データ分析から見えてくるいくつかの側面-	
내용	1998년 10월의 한일공동선언, 일본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이 실시된 이래 약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양국정부와 국민이 의도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주로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한국에서 추진한 각종 활동을 예로 들어 사회조사의 기법을 응용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양국민 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일시	2009년 5월 6일 (제13차 콜로키움)	
발표자	마쓰바라 다카토시 (松原孝俊)	규슈대학교수 (九州大学教授)
제목	최승희:제국 일본을 춤추다 - 공통과제에 도전하는 한일협력의 가능성 <인문사회학분야> - 共通課題に挑む日韓協力の可能性-<人文社会学分野>-	
내용	1930년대의 일본에 혜성같이 나타난 ‘반도의 무희’ 최승희는 일약 인기의 최고봉에 오르며 당대 최고 문인들의 절찬의 대상이 된다.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속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태평양전쟁의 시작으로 세상은 전쟁무드 일색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는 물론 오키나와, 대만, 한반도에서도 대동아전쟁 찬미, 익찬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반도의 무희 최승희’ 만은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조선의 춤을 계속 출 수 있었다.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일시	2009년 5월 21일 (특별강연회)	
발표자	지명관 (池明観)	한림대학교 원로교수
제목	일본학에서 동북아시아학으로	
내용	<p>곧 한일합방 후 10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한일관계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한일관계를 새롭게 전망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명치 이후 근대 일본의 '약진'이 '일본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이제부터의 일본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공존'과 공동 번영을 시야에 넣어 '동북아시아학'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p>	

일시	2009년 6월 19일 (제14차 콜로키움)	
발표자(1)	서승 (徐勝)	리스메이칸대학 (立命館大学)
제목	<p>야스쿠니 문제를 생각한다 靖国問題を考える</p>	
내용	<p>홀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화해의 방향을 거스르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은 고이즈미의 퇴임 이후에도 야스쿠니의 위상이 변화되거나 우경화, 군사화 방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 군사주의의 대두와 일본 헌법 9조를 개악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신을 기도하는 개헌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태줄인 야스쿠니신사의 야만성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역사학자에게 요망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야스쿠니 신사란 무엇인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널리 알리는 일이다.</p>	

발표자(2)	가쓰라지마 노부히로 (桂島宣弘)	리스메이칸대학 (立命館大学)
제목	<p>19세기 일본의 조선관의 전환과 조선침략 19世紀日本の朝鮮觀の轉換と朝鮮侵略</p>	
내용	<p>근대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근세(17-19세기) 한일 양국인의 상호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쿠가와 시대와 조선왕조후기의 상호인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가지 계기는 임진왜란과 명청교체, 서구의 충격이다. 이 세가지 계기를 중심으로 일본측에서는 武国意識, 조선측에서는 日本夷狄觀이 강고하게 확립된다. 특히 지식인이 서로를 오랑캐로 여기는 경향이 구조화되어 가는 가운데 양국은 근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양국의 근대 내셔널리즘의 숨은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일본의 경우, 유학·주자학의 영향이 약했던 가운데 18세기말에는 언어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부상하여 그것이 조선침략론으로 이어지게 된다.</p>	

3. 국내일본연구자 워크숍

일시: 2009년 8월 29일(토)

장소: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2층 원형강의실

주제: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현황과 비전 - 문학, 어학, 역사분야 -

발제자: 박유하(세종대 교수), 문명재(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순전(전남대 교수),
김용균(중양대 교수), 안선주(서울여대 교수), 이강민(한양대 교수),
김선민(숙명여대 교수), 윤병남(서강대 교수), 임성모(연세대 교수)

토론자: 권혁건(동의대 교수), 김환기(동국대 교수), 배정렬(한남대 교수),
안평호(성신여대교수), 이덕봉(동덕여대 교수)

이번 국내 일본연구자 워크숍은 일본연구 분야 가운데에서도 문학, 어학, 역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들을 한자리에 초빙하여 주제발표와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내년이 ‘한일병합(경술국치)’ 100년임을 감안하여 연구자 자신의 전공범위를 중심으로 과거 100년 동안 한국내 일본연구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 및 향후 또 다른 100년의 일본연구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밖에도 이번 워크숍은 국내 일본연구의 현주소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와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자간의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향후 일본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국내외 교류

본 연구센터는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早稲田大学アジア研究機構), 베이징 일본학 연구센터(北京日本学硏究センター), 데즈카야마가쿠인대학 국제이해연구소(帝塚山学院大学国際理解硏究所), 무사시대학(武蔵大学), 타이완대학 일어일문학과(台湾大学日語日文学科), 텐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天津社会科学院日本硏究所), 국제교양대학(國際教養大学),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九州大学韓国硏究センター), 도호쿠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東北大学東アジア硏究センタ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高麗大学亜細亞問題硏究所),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立命館大学コリア硏究センタ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硏究拠点) 등 해외 우수한 일본연구기관과 교류협정(MOU)을 체결하여 연구와 교육 등 각종 학술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해오고 있다.

Ⅲ. 연구센터 간행물

본 연구센터는 정기간행물인 『일본연구』이외에도 일본연구 수준의 제고를 위한 『일본연구총서』, 심도있는 일본이해를 위해 고전을 번역·출간하는 『일본명작총서』, 글로벌시대의 일본연구를 선도해 갈 『현대일본총서』등 다양한 총서를 기획하여 발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일본연구총서 6권, 일본명작총서 5권을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했으며, 2008년부터 도서출판문에서 간행되고 있으며, 제1차로 향후 100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 일본학 총서

본 연구센터에서는 한국 내 체계적인 일본문화 연구를 진작함과 더불어 일본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일본연구총서시리즈」 간행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시리즈인 ‘일본학 총서’는 일본의 문화, 역사, 문학, 어학, 교육 등에 관한 단행본으로 구성되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8월에 걸쳐 총 8권의 학술서가 간행되었다.

◆ 일본명작총서

‘일본명작총서’는 한국 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간행된 적이 없는 모노가타리(物語)·요쿄쿠(謡曲)·교젠(狂言)·하이쿠(俳句) 등의 일본의 고전시리즈를 번역하여 출판하고자 기획되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접해본 적이 없는 일본 문화의 원류를 번역, 소개하여 국내의 일본학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한국학 및 서양학연구자, 일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본문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에 걸쳐 총 7권의 고전 명작이 번역되었다.

◆ 현대일본총서

근년에 새롭게 기획된 현대일본총서는 현대 일본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된 시리즈이다.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한 분야인 현대 일본의 여러 가지 측면에 주목한 의욕적인 기획 시리즈이다.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에 걸쳐 총 2권이 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규약

1999. 8. 13 제정

2001. 9. 26 개정

2004. 7. 23 개정

2007. 1. 23 개정

2007. 11. 1 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부설 일본연구센터(영문명 : Resea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센터는 주체적이고 보편성있는 연구방법론으로 일본에 관한 제분야를 연구하여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인류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과제 위탁과 지원
2. 국내외 학문교류와 그 지원
3. 학술 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4. 전문 학술지와 연구 총서 간행
5. 일본 및 동아시아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6. 지역전문가 및 인적 자원의 육성
7. 일본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및 정보 축적
8.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 4 조 (기구) 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위원회
 - 가. 운영 위원회
 - 나. 연구기획 위원회
 - 다. 편집 위원회
 - 라. 학술·출판 위원회
 - 마. 자문 위원회
 - 바. 특별 위원회
2. 학술토대·실천기구
 - 가. 일본 정보자료원
 - 나. 일본 번역원
 - 다. 한일교류·교육원
3. 연구실
 - 가. 일본 문학·문화연구실
 - 나. 일본 어학·교육연구실
 - 다. 일본 역사연구실
 - 라. 일본 사상·종교연구실
 - 마. 일본 정치·경제연구실
 - 바. 재일코리안·재한일본인연구실
4. 행정기구
 - 가. 총무·기획부
 - 나. 교육·출판부
5. 청산광유지 장학회

제 5 조 (분장업무) 각 연구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문학·문화연구실은 일본의 문학과 제반 문화현상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일본 어학·교육연구실은 일본의 언어와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일본 역사연구실은 일본의 역사와 사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4. 일본 사상·종교연구실은 일본의 사상과 종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5. 일본 정치·경제연구실은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6. 재일코리안·재한일본인연구실은 일본 재일코리안(재일동포, 일본거주 재외국민 포함)과 재한일본인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제 6 조 (임원) 본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학술토대·실천기구 원장 3명
3. 연구실장 6명

4. 총무 1명

5. 감사 1명

제 7 조 (소장)

- ① 소장은 본교 문과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인문한국(HK)지원사업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10년으로 한다.
- ② 소장은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 8 조 (학술토대·실천기구 원장, 연구실장, 총무)

- ① 일본 정보자료원장은 일본 정보자료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일본 번역원장은 일본 번역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한일교류·교육원장은 한일교류·교육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④ 연구실장은 해당 연구실의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 ⑤ 총무는 회계업무를 포함한 연구소의 제반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⑥ 학술토대·실천기구 원장, 연구실장, 총무는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청산과유지 장학회)

- ① 본 연구센터에 청산과유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청산과유지 장학회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② 청산과유지 장학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교 대외협력처 및 학생처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 10조 (감사)

- ① 감사는 본 연구센터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감사는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 회계와 정산 내역을 소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조 (연구교수 및 연구원) 본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1. 연구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본 연구센터에서 외부 학술과제를 수행]

하는 연구자 및 대학의 연구교원 위촉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절차는 고려대학교 연구교원 임용규정에 의거한다.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4. 객원연구원은 본 대학 또는 타 대학 및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이나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본 연구센터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5. 연구보조원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부생, 석사 학위 과정 학생들을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6.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HK연구교수/원의 임용은 별도의 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 12조 (간사)

- ① 소장은 본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총무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위원회

제 13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 위원회는 소장, 외부 자문위원, 3원6실의 원장 및 실장, 총무 중에서 8명 내외로 구성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③ 회의는 3월 초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는 임

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센터의 제규정의 제정 및 철폐
4. 연구센터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
5. HK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6.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4조 (연구기획위원회)

- ① 연구기획위원회는 소장, 3원6실의 원장 및 실장, 총무 중에서 연구·기획 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연구기획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기획위원회는 3원6실의 연구 및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3원 6실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 15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 위원회는 연구센터의 학술지인 『日本研究』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외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연구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본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후원 및 자문하기 위해 본 연구센터 자문위원들을 통하여 학술지의 내용 및 연구윤리를 강화한다.

제 16조 (학술·출판위원회)

- ① 학술·출판위원회는 소장, 3원6실의 원장 및 실장으로 구성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 ② 학술·출판 위원회는 연구센터의 모든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과 간행물에

관한 편집·출판 업무를 협의하고 관리한다.

제 17조 (자문위원회)

- ① 자문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명예교수, 본 연구센터 관련 연구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본 연구센터의 전반적인 연구방향과 섭외업무에 관해 자문한다.

제 18조 (특별위원회)

- ① 특별 위원회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각 연구실 단위를 넘는 학술활동을 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성립된다.
- ② 특별위원회는 소장, 관련 연구실장 및 특별 위원회 활동에 가장 적절한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제4장 재 정

제 19조 (경비) 본 연구센터의 경비는 기금, 사업보조금, 연구개발비, 학술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0조 (회계연도) 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예산과 결산) 소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해 예산서와 사업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 사업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 (회계 감사)

- ① 이 연구원의 수입과 지출은 연 1회 이상 본교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소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 연구소의 운영과 회계 상황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제 23조 (재산의 귀속) 본 연구센터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5장 규약개정 및 준용

제 24조 (규약개정 등) 본 연구센터의 규약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 (운영세칙) 본 연구센터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26조 (준용) 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및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日本研究』投稿規定

가. 투고요령

1. 내용 : 일본문학, 문화, 어학, 교육, 역사, 사상, 종교, 정치, 경제, 재일코리아, 재한일본인 등 일본에 관련된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 : 원고투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 e-mail로 제출한다.
3. 투고원고 제출처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e-mail : kujc@korea.ac.kr
전화번호 : 02) 3290-2592(일본학연구센터)
4. 투고마감일 및 발행일 :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마감일 및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임시로 중간할 수 있다.
마감일: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
발행일: 상반기 8월31일 하반기 2월28일
5. 게재 및 수정 : 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수정에 관한 사항은 심사규정에 상술.)
6. 교정 :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7. 별쇄본 : 게재가 결정된 필자에게는 본 연구지 1부를 증정한다.(별쇄본은 필자의 신청을 받아 제작하며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8. 심사료 및 게재료 :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에 심사료를, 게재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게재료를 일본학연구센터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해외투고자의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료, 게재료를 본 연구센터가 지원할 수 있다.)
9. 저작권 :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센터가 소유한다.
10. 지적재산사용동의권: 게재 논문으로 확정되었을 시에는 <사이버 출판 동의서>

를 제출하여 사이버 출판 동의 및 저작권에 관한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의 권리 일체에 대해 동의한 연구자에 한하여 논문을 게재한다.

11. 사이버 출판 : 게재된 모든 논문은 일본학연구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출판한다.

나. 투고논문 작성요령

1. 편집용지 : <B5용지> 위 15, 머리말13, 왼쪽17, 오른쪽15, 아래20, 꼬리말0, 제본7.
2. 원고분량 : 작성요령에 준하여 편집한 상태로 요지, 참고문헌 등을 포함해 16~19매로 한다. 20매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한다.
3. 사용언어 :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작성 : 논문제목 - 신명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필자명 - 신명조 11, 줄간격 140, 오른쪽 정렬.
 e-mail address - 신명조 8, 줄간격 100.
 요지 - 신명조 또는 신명조약자 8, 줄간격 140.
 (요지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며, 분량은 논문 1면의 1/2쪽 이내로 한다)
 주제어 - 신명조 8, 진하게.
 (일본어와 영어로 4~6단어를 제시한다.)
 큰제목 - 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70.
 본문 - 신명조 10, 줄간격 170.
 인용문 - 신명조 9, 줄간격 170, 문단모양: 왼쪽6ch, 들여쓰기 안함.
 각주 - 신명조 9,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 또는 참고한 쪽수를 명기한다.)
 참고문헌 - 신명조 8, 줄간격 140.

기타 참고문헌 작성요령 및 간격의 설정 등 자세한 사항은 <『日本研究』論文作成要領>을 참고한다.

『日本研究』論文作成要領

	일본어 교육의 방향	→	①
	-일본어 교육의 미래-	→	②
	2줄 띄우기	→	③
		김철수*	→ ④
		6abc@korea.ac.kr	→ ⑤
	1줄 띄우기		
<목차>			
I. 연구취지			
II. 본론			
III. 맺음말			
	1줄 띄우기		
<요지문>	_____	→	⑥
	本研究は日本語教育の未来を.....		
		
		
		
		
		
	1줄 띄우기		
<주제어>	_____	→	⑦
	都市、映畫館、ムービー、繪本翻譯(City, Theater, Move, Translation of picture books)		
	2줄 띄우기		

* 00대학교 (00소속) 교수 00학 전공
이 논문은 0000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0000-000-000000)

I. 연구목적 및 방법

→ ⑧

1줄 띄우기

1.1. 한국의 일본어 교육의 실태

→ ⑨

본 절에서는.....

.....

.....

.....

1줄 띄우기

II. 본론

1줄 띄우기

.....

.....

.....

1줄 띄우기

III. 맺음말

1줄 띄우기

.....

.....

2줄 띄우기

논문 작성요령

- ① <편집프로그램> 논문작성요령은 <한글>기준임. 논문은 반드시 <한글 2002>이상으로 작성한다.
- <편집용지> B5용지
 <여백> 머리말 13, 왼쪽 17, 오른쪽 15, 아래 20, 꼬리말 0, 제본 7
 <분량> 요지,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16~19매이내.
- ② <논문제목> 신명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③ <소제목> 신명조 12, 가운데 정렬
- ④ <필자명 및 사사표기> 필자명은 한 칸씩 띄어 쓰고, 필자명 끝에 *표를 위 첨자로 한 후, ([모양]-[글자모양]에서 [속성-위 첨자]를 선택) 소속, 직위, 전공분야를 각 주로 기입한다. 각주번호 1)에 블록을 씌운 후 [글자모양]에서 글자색을 흰 색으로 하여 감추고, 본문에서 시작되는 각주는 [모양]의 [새 번호로 시작]에서 각주번호를 '1'로 한다.
- 정부 기관 등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경우, 사사표기는 필자명의 주석에 함께 표기한다.
- ⑤ <이메일> 신명조 8, 줄간격 100, 오른쪽 정렬
- ⑥ <요지문> 작성언어: 영어(권장) 또는 일본어.
 분량: 논문 1면의 1/2쪽 이내.
 글자크기: 신명조 또는 신명조약자 8, 줄간격 140
- ⑦ <주제어> 일본어와 영어로 4-6단어를 제시한다.(신명조8, 진하게)
- ⑧ <본문 큰제목> 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70, 가운데 정렬
- ⑨ <본문> 신명조 10, 줄간격 170
- <본문의 번호 및 부호>
- * 대항목은 I, II, III..., 중항목은 1.1, 1.2..., 소항목은 1.1.1, 1.1.2...의 순으로 배열한다.
 - * 본문 중 인용부호: “...”, 재인용 또는 강조: ‘...’, 단행본·문헌·신문·잡지의 제목: 『 』(단, 영문제목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이중괄호 안에 넣지 않는다.), 논문·기사·작품의 제목: 「 」, 인용시 필자의 중략 (중략)
- <인용문> 원문의 인용은 행을 새로 하여 상하를 한 칸 띄운 뒤 ‘문단설정’을 한다.

(글자모양 : 신명조 9, 줄간격 170, 문단모양: 왼쪽6ch, 들여쓰기 안함.)

번호가 다른 예문이 연달아 나올 경우, 각각의 예문 사이는 띄우지 않는다.

예문번호 표시는 통일 시킬 것.

<각주> 신명조 9,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각주의 인용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발행년도와 쪽수 등을 명기한다.

<외래어표기>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⑩ <참고문헌> 제목은 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40

내용은 신명조8, 줄간격 140

*필자명을 기준으로 **국문, 일문, 영문 순**으로 각각 가나다, 오십음,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는 가장 아래에 별도로 표기한다.

* 필자명(연도), 논문 또는 단행본명, 게재권 호, 발행처, 쪽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 인용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⑪ <참고문헌 단행본 예시>

⑫ <참고문헌 학술논문 예시>

⑬ <같은 저자의 문헌을 복수로 인용하는 경우> 같은 저자의 문헌을 복수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하의 저자 이름은 _____으로 표시하며 논문발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논문을 먼저 기입한다.

⑭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제작자, 주제명, 웹 주소(검색일자)의 순으로 표시한다.

⑮ * 본문 내용 및 참고문헌을 기입할 경우, 일본어서적의 경우에는 콤마 「、」, 한국어와 영어서적의 경우에는 콤마 「,」를 쓸 것.

* 반드시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이 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日本研究』 審査規定

제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2조 (논문의 내용)

일본문학, 문화, 어학, 교육, 역사, 사상, 종교, 정치, 경제, 재일코리안, 재한일본인 등 일본에 관련된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논문의 작성 규정)

투고 규정에 제시한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투고요령에 준하지 않을 경우, 심사
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논문 심사 및 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후 논문을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E-mail
로 송부한다. 심사 시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판정조건과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를 소정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논문심사서, 심사 수탁서와 원고를 함께 제
출한다.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
정한다.

제5조 (게재여부 결정)

1. 논문 심사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 평가 한다.

심사기준: 총100점

- 1)논문 내용의 독창성 20점
- 2)논리 전개의 정합성 20점

-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20점
- 4) 연구 결과의 학계 기여도 및 파급효과 20점
- 5) 용어의 통일성 및 구성과 체제 20점

2. 논문 심사 평가 결과는 아래의 5단계로 나뉜다.

- 1) 게재: 90-100점
- 2) 게재1: 75-89점
- 3) 게재2: 60점-74점
- 4) 수정 후 재심사: 40-59점
- 5) 게재 불가: 0-39점

3. 위의 1), 2), 3)의 심사 결과를 받은 논문은 'A', 4)는 'B', 5)는 'C' 등급으로 판정하여, 아래 표에 의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논문 등급	심사결과
A,A,A/A,A,B	게재
A,B,B/A,A,C	수정 후 게재
A,B,C/A,C,C	수정 후 재심사
B,B,C/B,C,C/C,C,C	게재 불가

제6조 (심사 평가 항목)

- 1. 논문 내용의 독창성
- 2. 논리 전개의 정합성
-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 4. 연구결과 학계 기여도 및 파급효과
- 5. 용어의 통일성 및 구성과 체제

제7조 (심사 제외 논문)

- 1.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본 학술지의 투고 규정 및 윤리 규정에 준하지 않는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日本研究』 研究倫理規定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의 학술지인 『日本研究』의 발간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 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연구환경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의 현행 윤리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학술지인 『日本研究』의 발간에 우선되는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밝힌다.

제2장 연구자

- (1) 연구자는 각자 연구물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및 이중출간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와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

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윤리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연구센터의 현행규정을 따른다.

제3장 심사위원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논문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출판 전까지 논문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 (3) 심사위원은 본인이 논문심사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될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본 연구센터의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이 본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편집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

- (1)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논문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내용 및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 및 제보가 발생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윤리위원회

(1) 구성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본 연구센터 운영위원 및 본 학술지 편집위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2) 목적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운영

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3) 운영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해당 위반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센터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제소자의 무혐의를 통보하며 후속조치를 취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와 징계를 할 수 있다.

- 본 학술지에서 논문목록 삭제
- 해당 연구결과의 수정 및 무효화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3년 이상)
- 공식적 연구관리 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

제6장 부칙

-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